

심 사 보 고 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0
----------	-----

2020. 10. 2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31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0월 16일

-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사유

-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한 실정임

-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와 관련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길 촉구코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임
-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과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 현 제주 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의 무효화, 군사재판 외에도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 등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이에 관련된 국회와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건의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참고자료 : 1.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 4·3 사건 희생자 연령별 현황

참고자료 1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출처 : 제주 4·3 평화재단)

구분	희생자(명)					유족(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	수형자	
소계	15,830	11,094	4,108	286	342	82,616
인정	14,532	10,422	3,631	195	284	80,451
불인정	100	14	5	79	2	722
철회	1,172	641	463	12	56	1,431

참고자료 2

4·3 사건 희생자 연령별 현황

(출처 : 제주 4·3 평화재단)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	수형자
계	14,532	10,422	3,631	195	284
10세이하	818	708	73	37	-
11~20세	2,534	1,712	619	103	100
21~30세	5,536	3,316	2,048	46	126
31~40세	2,332	1,682	606	9	35
41~50세	1,421	1,217	185	-	19
51~60세	972	898	70	-	4
61~69세	568	551	17	-	-
70세이상	348	336	12	-	-
연령미상	3	2	1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 55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 의 자	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50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발 의 자 : 이상식, 박문희, 연종석,
전원표, 임영은, 연철흙,
최경천, 김기창, 윤남진,
이수완, 서동학, 송미애,
황규철, 임동현, 김국기,
이숙애, 박상돈, 이의영,
정상교, 오영탁, 이옥규,
육미선, 허창원, 이상욱,
박형용, 박우양, 이상정,
김영주, 장선배, 심기보,
박성원 의원

□ 제안 이유

- 2000년 1월 12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라 한다)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여 당초의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선정하고,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2건의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음.

- 현대사의 비극은 비단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한 나라의 역사이고 민족의 역사이기에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임
-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와 관련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과거사의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위원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무입니다. 비뚤어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립,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을 통한 화해는 미래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사의 비극은 비단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이며 민족의 역사이기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기마경찰에 의한 어린 아이의 희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항의를 공권력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경찰 출신 간부가 82%에 이르는 군정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지속되었습니다. 무장경찰에 의해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졌고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은 무장봉기로 맞서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기억 속에 부끄럽게 자리 잡고 있는 제주4·3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 인구의 1/10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은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제주도민은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암울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제주도민의 응어리진 마음에 한줄기 위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2000년 1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제주4·3사건이 국민의 관심 속에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이어 2005년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사건 해결의 노력이 더 해야 합니다. 최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난 7월 27일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1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희생자에 대한 군법회의 무효화와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3사건 해결을 위해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적절한 배·보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드립니다.

2020년 10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